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9

제출년월일 : 2000.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개정이유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정·시행(2000. 1. 1)에 따라 농지개량계 조직·운영을 정하는 현행조례의 제명 등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조례제명 변경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 ⇒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

- 일부내용 변경

· 농지개량계 ⇒ 수리계

·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노역제공 내용 삭제 등

3. 조례개정안 : 따로 붙임

4. 근거법령 : 따로 붙임

5. 기타 참고자료 : 따로 붙임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농지개량계”를 “수리계”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법”이라 한다)제4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지 제16조중 “개량계”를 “수리계”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법제88조제1항”을 “법제43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내지 제14조중 “개량계원”을 “수리계원”으로 한다.

제9조내지 제15조중 “개량계장”을 “수리계장”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운영경비 :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 소요비용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금액

③ 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때에는 법제4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농지개량조합구역”을 “공사관리지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2호”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량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설치된 개량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한 개량계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증개정조례

현행	개정안
<u>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u> 제1조(목적)이조례는 <u>농지개량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제8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u>에 의하여 <u>농지개량계(이하“개량계”라 한다)</u>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규약이라함은 <u>개량계</u>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라함은 <u>개량계</u>가 관리하는 농업생산 기반시설(이하“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 관리) ① 도지사는 <u>법제88조제1항</u>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u>개량계</u>를 조직하여 운영 하게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u>개량계</u>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u>개량계</u>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할 수 있다.	<u>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u> 제1조(목적)이 조례는 <u>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하“법”이라한다)제43조제2항 및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u>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행·제1호와 같음) 2. <u>수리계</u> 3. <u>수리계</u> 제3조(기반시설 관리) ① <u>법제43조제1항</u> <u>수리계</u> ② <u>수리계</u> <u>수리계</u>

현행

개정안

제4조(개량계의 조직)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량계를 조직하고자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개량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개량계원 자격자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개량계원 명부
- 3.~4. (생략)

② 개량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생략)

1. ~ 2.(생략)

제5조(개량계 등록) 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개량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개량계의 규약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2.(생략)
3. 개량계의 구역
- 4.(생략)
5. 개량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6.~7.(생략)
8. 개량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 9.(생략)

② 개량계의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리계의 조직)①

수리계

..... 수리계원

수리계원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 3.~4.(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② 수리계

1. ~ 2.(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제5조(수리계 등록)

수리계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① 수리계

- 1.~2.(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3. 수리계의 구역

- 4.(현행 제4호와 같음)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사항

- 6.~7.(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 9.(현행 제9호와 같음)

② 수리계

현행	개정안
제7조(개량계원의 자격) 개량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
1. 개량계의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개량계의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1. 수리계..... 2. 수리계.....
제8조(총회) 개량계에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개량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총회) 수리계..... 수리계원.....
제9조(임원)① 개량계에는 임원으로 개량계원 중에서 계장 1인과 간사 2인이내를 두며, 선출방법·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① 수리계..... 수리계원.....
② 개량계장은 개량계를 대표하며 개량계 업무를 담당한다.	② 수리계장..... 수리계..... 수리계.....
제10조(개량계의 임무)① 개량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① 수리계.....
1. ~ 2.(생략) 3. 개량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개량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등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2.(현행 제1호 및 제2와 같음)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제11조(경비의 부과) ① 개량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개량계원에게 금전을 부과하거나 그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11조(경비의부과) 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필요한 경우에는 개량계원에게 노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노역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법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야 하며 금전으로 환산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반시설로부터 개량계원이 받는 이익을 참작하고 그 부과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3.(생략)	1.~ 3.(현행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음)
③ 개량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리계는 제1항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개량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때에는 법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개량계”로 본다.	④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때에는 법 제4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경비부과 조정신청)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개량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개량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량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경비부과 조정신청)① 수리계원은 제11조 수리계원 수리계장 수리계장 수리계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개량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리계장 수리계장

현행	개정안
제13조(예산및회계) ① 개량계는 매 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매 연도개시 1월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예산및회계) ① 수리계.....
② 개량계는 연도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수리계.....
③ 개량계는 매 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리계.....
④ 개량계는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 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④ 수리계.....
⑤ 도지사는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개량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⑤..... 수리계.....
제14조(서류의 비치) 개량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개량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 수리계원.....
1. 개량계의 등록신청 관계서류	1. 수리계의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개량계원 명부 등 규약에 정한 서류	2. 규약, 수리계원 명부등 규약에 정한 서류
제15조(개량계 해산)① 개량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량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수리계 해산)① 수리계는..... 수리계.....
1. 수해지역이 농지개량조합구역으로 편입된 때	1. 수해지역이 농지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
2.~3.(생략)	2.~3.(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개량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4조의 서류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수리계장.....

현행	개정안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u>농지개량조합</u> 2.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③ <u>도지사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개량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개량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u> 제16조(지도감독)① <u>개량계</u>는 도지사가 지도 감독한다. ② 도지사는 <u>개량계장</u>에게 <u>개량계</u>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u>농업기반공사</u>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③ <u>도지사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u> 제16조(지도감독)① <u>수리계</u>..... ②<u>수리계장</u>..... <u>수리계</u>.....

근거 법령 발췌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제43조(수리계) ① 시·도지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관리지역외의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그 농업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하는 수리계를 조직·운영하고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수리계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계원으로부터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수리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대납한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시장·군수에게 그 징수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리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당해 시장·군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의 징수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방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시행규칙 】

제24조(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조직기준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수리계의 조직기준

- 가.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것
- 나.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 2. 수리계의 경비부과 기준
 - 가. 운영경비 :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 나. 손괴된 시설의 복구비 : 소요비용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 다. 농업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 설치사업비를 내용년수로 나눈 금액
- 3. 수리계의 해산기준
 - 가. 수혜지역이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
 - 나. 수혜지역이 도시계획구역의 설정 또는 산업단지의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업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때

“국민을 움직여야 농업이 산다”

농 립 부

정보통신망

우427-760 경기 과천시 중앙 : / 전화 (02) 500-2662 FAX (02) 507-3964
개발정책과 과장 박영기 담당자 이우곤 (E-mail : leewg@maf.go.kr)

문서번호 개발51331-72

시행일자 2000.01.26. (3년)

공개여부 공개

경 유

반 음 받는곳참조

참 조

선 랄 장	지 시
결 일자	결 재
수 번호	공 람
처 리 과	심 사 일
담 당 자	
심 사 자	

제 목 수리계 조례(안) 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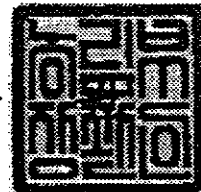
1.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24조와 종전 농지개량제관리조례(안)을 토대로 별첨과 같이 수리계 조례(안)을 보내드리니, 시·도 자체조례 제·개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수리계 조례(안) 1부 끝.

농 립 부 장

전결 개발정책과장 박영기



받는곳 : 나, 농병 02.

수 리 계 조 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43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 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 5천분의 1 지도)

㉔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도지사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수혜자의 수가 5인이상일 것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이상일 것

제5조(수리계의 등록)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①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수리계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경비부과·회계 및 업무집행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임원) ①수리세에는 임원으로 수리계원중에서 계장 1인과 간사 2인이내를 두며, 선출방법·임기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등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예산 및 인력등을 가능한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부과) ①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운영경비 :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 소요비용중 지방자치단체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는 때에는 법 제43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 ①수리계원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금액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및 회계) ①수리계는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당해년도 11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수리계는 연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시·도지사는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4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명부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5조(수리계의 해산) ①수리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수해지역이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
2. 수해지역이 도시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4조의 서류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반공사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지방자치단체

③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①수리계는 시·도지사가 지도·감독한다.

②시·도지사는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수리계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 시·도지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량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설치된 개량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개량계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